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등 방송 사업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1) 법체계 개편 : IPTV사업법 등 통합 및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 2) 분류체계 개편 : 플랫폼-콘텐츠 별의 수평규제 체계로의 전환
 -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 규정을 신설하여 일원화함(제2조 제4호)
 - 부가 유료방송사업자 규정 신설을 통한 OTT 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제2조 제7호)
 -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개인방송, MCN 등) 신설(제2조 제8호)
- 3)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촉진
 - 신규, 융합서비스 승인 조항 신설(제13조)
 - 케이블TV SO에 전국사업자 면허 획득 기회 부여(제16조)
 -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을 신고'로 원칙적 변경(제41조)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 신설(제51조)
 - 외주제작 관련 금지행위의 보완(제55조)
- 4) 방송의 지역성 제고 : 지역방송 발전 및 관련 규제 보완
 - 지역방송 정의(제2조 제13호) 및 지역방송발전 지원 장 신설(제7장)
- 5) 공영방송 범위 및 공적책무 확립 : 공영방송 정의 신설 및 공적 책임 명확화
 - 공영방송 범위(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 신설(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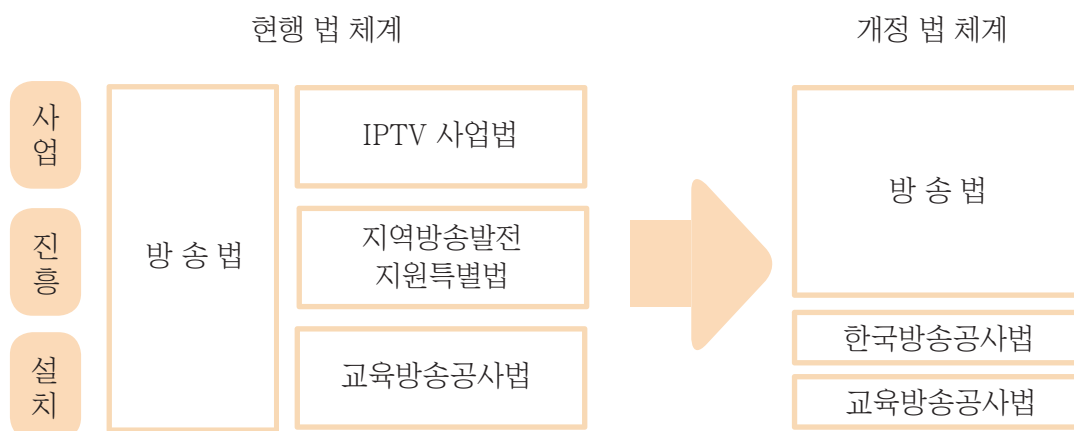
I. 통합방송법 개정 배경

- 방송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간 간극이 발생하고, 지상파 및 아날로그 방송 기반의 현행 법체계가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방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전송수단)의 지속적인 등장과 방송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으로 국내 방송 법규제의 이념 및 실효성, 체계성이 약화됨에 따라 방송 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시급
- 개정 원칙은 (1)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2) 공정경쟁 확보, (3) 수평규제 체계에 따른 의무-규제 간 일치성 및 형평성 확보, (4)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 (5) 분산된 방송 관련 법 통합, (6) 개념 및 용어와 방송 현실 간 정합성 제고 등

II. 주요 개정 내용

1. 방송법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관련법을 통합

- 의무-규제 간 일치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IPTV 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 내용은 방송법에 반영
- 기존 방송법 체계가 매체별로 분리된 체계였다면, 개정 체계는 이를 재구조화하여 기능(일반 방송과 공영방송의 분리) 중심의 체계로 개편
- 또한 '지역성 구현'에 대한 이념적,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방송법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합
- 한편, 공-민영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행 방송법 내에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부분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
· 신설(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방송 관련 법체계 개편 (안)]

2. 플랫폼-콘텐츠 별 수평규제 체계로의 전환

○ 방송사업(자) 분류체계의 통합

- 역무 통합을 통해 나열식으로 분류되었던 과거 방송역무 및 사업 분류체계를 콘텐츠와 플랫폼의 수평규제 체계 방식으로 전환

방송사업 (서비스)							
지상과 방송 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방송전송망 제공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사업자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 (SO, 위성, IPTV 등)	부가 유료 방송사업자 (OTT, 중계유선 등)	종편 및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전문 편성 PP		

[방송역무 및 사업 분류체계 개편(안)]

∴ (point) IPTV법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던 IPTV를 통합방송법으로 포섭하여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OTT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방송, MCN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

○ 유료방송사업자에 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를 포함(제2조 제4호)

- 방송기술 융합 및 시장경쟁 증가 상황을 반영하여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 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를 유료방송 단일 역무로 통합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2조 4. 나. 유료방송사업 : 방송국, 유무선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 채널 별 또는 방송프로그램 별로 대가를 받고 그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

∴ (point) 인허가, 사업권역, 재송신, 이용약관 등에 있어 전송방식이나 플랫폼 유형에 상관없이 유료방송 사업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고,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역무통합과 기술중립성 도입-지역사업권 제도 변경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와 경쟁양상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부가 유료방송사업자(OTT, 중계유선) 규정 신설을 통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제2조 제7호)

- 현재 비(非)규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IP기반 미디어의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OTT 등 IP기반 미디어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방송 규제체계 내에 포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2조 7. 나. 부가 유료방송사업자 : 방송을 수신하여 단순히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 (point) OTT를 방송법에 포섭시킴으로써 OTT에 진입(승인), 심의, 공정경쟁 촉진 및 금지행위 등과 관련된 규제가 적용

○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개인방송, MCN 등) 신설 (제2조 제8호)

-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콘텐츠 역무를 통합,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개인방송, MCN 등의 인터넷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방송법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함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2조 8. 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제공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제11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point) 개인방송, MCN 등의 인터넷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등록), 심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터넷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3.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촉진

○ 신규, 융합서비스 승인 조항 신설(제13조)

- 경직된 기존 사업분류 및 인허가 체계로 인해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융합서비스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및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허가 대상 여부 판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13조(신규서비스의 승인등) ①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하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 (point)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위성 DCS 사례 등)의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나 어떠한 신규,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승인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슈 존재

○ 케이블TV SO에 전국사업자 면허 획득 기회 부여(제16조)

- 유료방송 플랫폼 역무 통합으로 케이블, 위성방송, IPTV(매체 기준)의 전국-지역사업권 구분 체계의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 면허 단위를 기준으로 전국-지역사업권을 부여
- 이미 지역사업권을 기 부여받은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자동 소멸함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16조(지역사업권) ③ 다채널유료방송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승인받은 경우 전국사업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업자의 지역사업권은 소멸된다.

∴ (point) 현행 유료방송 시장의 지역사업권 제도는 유지하되, 역무통합에 대응하여 지역·전국 사업권을 매체 기준(지역매체·전국매체)이 아닌 사업면허 선택 방식으로 변경함.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대형화가 기대되고, 방송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사업자간 제휴, 특수목적법인 설립, 망 구축 등) 및 시장구조 개편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을 '신고'로 변경(제41조)

- 유료방송 사업자간 상품 및 서비스 경쟁 촉진 및 시청자(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 약관의 '승인'을 '신고'로 변경
- 단, 방송사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유료방송사업자(부가 유료방송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도록 함

현행(방송법)	개정안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승인)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 신설(제51조)

- 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 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필수적 성격이 있는 설비를 기반으로 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공정경쟁을 보장 또는 촉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

현행(IPTV법)	개정안
〈신설〉	제51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방송사업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다른 방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기통신설비를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가·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 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oint)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는 완화되나, OTT 등 부가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신고 의무가 부여됨(기존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인 경우 약관신고 의무 없음). 한편, 필수적 설비를 활용한 경쟁제한 행위를 억제하고, 역무통합 및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른 필수설비 제공 제도를 보완하여 방송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단, 이때 후발사업자의 경우 망과 플랫폼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방송설비중 필수적 설비의 범위와 요건, 세부 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외주제작 관련 금지행위의 보완(제55조)

- 금지행위 유형 중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갑을 관계로 고착화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새롭게 추가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55조(금지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외주제작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또는 권리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point) 계약, 수익 배분, 인력 운용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 문제시되어 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향후 외주사-방송사 간 기존 거래 및 계약 행태에 대해 금지행위 저촉 여부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4. 지역방송 발전 및 관련 규제 보완

○ 지역방송발전 지원을 위한 장 신설(제7장)

- 지특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포섭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지역방송의 일부로 포함시켜 방송 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 가치를 보호(제2호 제13호)

현행(지특법)	개정안
제2조 1. 지역방송 :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 :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 13. 지역방송 :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14. 지역방송사업자 :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뿐만 아니라 기존 지특법에 명시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제7장(지역방송발전의 지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활성화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역할 등을 강화
- ※ 통합방송법 제7장(지역방송발전의 지원)의 제73조(지역방송발전의 지원), 제74조(지역방송의 책무), 제75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76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7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등)

∴ (point) 기존 지역지상파로만 한정되어 있던 지역방송에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포함하였으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현 케이블TV SO. 개정안의 경우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중 지역사업면허를 득하고 지역채널 운영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지역방송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방송의 범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5. 공영방송 범위 및 공적책무 확립

○ 공영방송 범위(제2조 제11호, 제12호) 규정

- 기존 방송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영방송의 범위를 설치법에 근거하여 KBS, EBS, MBC로 규정하고 일반 방송에 비해 강한 공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위상 및 책무를 명확히 함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2조 11. 공영방송 :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 12. 공영방송사 : 공영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공적책임 조항 신설(제6조)

- 일반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행의 의무를 명확히 함
- ※ 현행 방송법 내 한국방송공사 관련 장(제4장)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제정
- 구체적인 내용은 (1) 국민의 문화 창달과 공동체 발전에의 기여, (2) 연도별 공적가치 이행계획 마련, (3) 공적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성과 공표, (4) 국가의 재정적 지원, (5)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규정, (6) 3년마다 공적 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및 공표(방송통신위원회), (7) 재허가 심사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 ※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제5조로 통합하여 일반 방송에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명시

현행(방송법)	개정안
〈 신 설 〉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①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을 통한 국민의 문화 창달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는 제5조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과제(이하 “공적 가치 이행계획”이라 한다)를 연도별로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영방송사는 공적 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그에 따라 종합적으로 측정한 공적 성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도하고 공적 가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제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와 역할 등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사의 공적 가치 이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제5항에 따른 역할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이들 사업자의 재허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9	E-Mail.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10	E-Mail. jyojang@shinkim.com
이민영 변호사	TEL. 02 316 1783	E-Mail. myolee@shinkim.com
이종관 전문위원	TEL. 02 316 4480	E-Mail. jkwlee@shinkim.com
이지은 선임연구원	TEL. 02 316 1720	E-Mail. jeunlee@shinkim.com